

일본, 돈육 관세긴급조치 발동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수입 돈육의 관세를 인상하는 ‘관세긴급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WTO 협정상의 일반 세이프가드(SG)나 특별세이프가드(SSG)와는 달리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제7조의 6)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발동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이다.

발동요건은 분기별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2001년 이후 4년 연속 발동되고 있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1kg당 지육은 510.03엔(관세 100엔), 부분육은 681.08엔(관세 135엔)으로 인상된다. 향후 시장가격의 동향이 주목된다.

1. 돈육수입 동향

일본의 돈육 관세긴급조치는 연도초에서 각 분기말까지 누계 수입량이 과거 3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하는 경우, 연도말까지 기준수입가격(관세포함가격)을 인상하는 조치이다.

돈육 수입이 증가한 것은 미국에서 2003년 12월 광우병(BSE)에 의해 일본이 대미 소고기 수입을 중단함에 따른 대체수입에 의한 영향이 크다. 이에 의해 돈육수입이 급증, 2004년 1분기(4~6월) 수입이 31만 6,755톤으로 발동기준물량 25만 7,004톤을 대폭 초과하였다.

2. 관세인상 내용

이와 같이 수입량이 발동기준을 대폭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동되는 것이며, 발동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연도말인 2005년 3월 31일까지이다. 발동이후 수입기준가격은 돈육의 수입가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진 다. 또 관세는 지육과 부분육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일본은 UR 협상에서 기준수입가격을 1kg당 지육은 409.90엔, 부분육은 546.53엔으로 관계 국가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육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가격(CIF)이 1kg당 149엔까지는 361엔의 종량세가 부과되며, 수입가격이 149에서 489엔까지는 수입기준가격이 409.90엔에서 510.03엔으로 인상되고, 이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서 징수된다. 또, 수입가격이 489엔을 초과하면 4.3%의 종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발동이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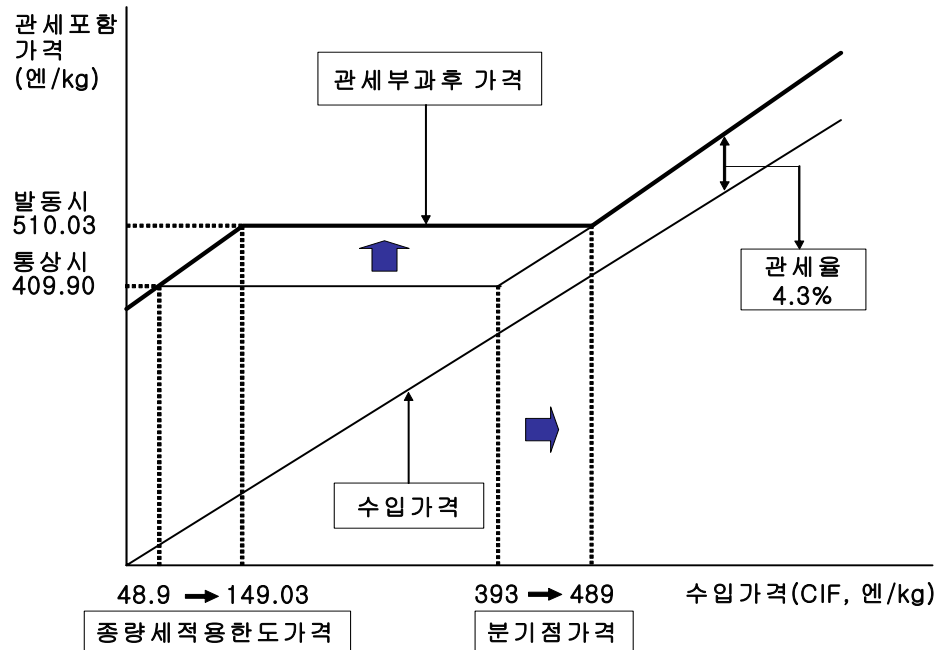
표 1 돈육 수입량 동향

단위 : 톤		
	수입량	발동기준수량 (과거 3년 평균수입량의 119%)
과거 3년간 4~6월 평균	215,970	257,004
2004년 4~6월	316,755	

표 2 발동후 기준수입가격

단위 : 엔/kg			
	기준가격	관세	발동후 기준수입가격
지육	409.90	100.13	510.03
부분육	546.53	134.55	681.08

그림 1 관세긴급조치 발동이후 수입가격, 지육의 경우



3. 향후 가격전망

관세긴급조치는 생산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실효성에 대해서 최근 의문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발동이후 도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관세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되어 수입량이 감소하여 국내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발동의도이다. 과거 3년간에 걸친 경험을 보면, 의도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관계자들 중에는 이번에 발동되어도 국내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다. 수입품은 햄 등의 가공용 원료가 많은데 대하여 국내산은 가정용으로 슈퍼 등에서 팔리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동이후 11월경 국내산 도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여 농협이 국내산 돈육을 매입, 시장가격조정에 개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수입 감소에 의한 도매가격 인상효과는 약해지고 있다.

2003년도 수입실적을 보면, 냉동육이 수입돈육의 77%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8월 관세긴급조치가 발동된 이후의 도매가격이 발동이전의 4~7월간 보다도 낮았던 적이 있다. 불고기용의 덴마크산도 2001년과 2002년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다.

식육업계에서는 냉동돈육의 90%를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동육은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는 부담증가를 각오하고 점유율을 높인 면도 있다. 또 농림성에서 부과하는 관세수준이 수입업자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수요면에서는 4~7월은 여름철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수입돈육의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9월 이후는 수요감소로 인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는 수입업자는 싸게 판매하는 경향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돈육 관세긴급조치가 없다면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현행 제도는 국내산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약하다고 하는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